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96
----------	-----

2023년 4월 19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8일, 남창진 의원 (찬성자 39명)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다. 상정일자 :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3년 4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남창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상위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인용 조문 수정함. 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 (이하 ‘영’이라고 함)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(생 략)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<u>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</u>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9조(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- 안 제9조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「도로법」 제97조1)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의 제6

1) 제97조(공익을 위한 처분)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1.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
 2.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3.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
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.

항²⁾과 제7항³⁾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
- 인용 조문인 영 제71조 중 제3항이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“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”를 개정된 “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”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- 참고로, 신설된 영 제71조제3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관리청이 1년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.

2)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.

3) ⑦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·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5. 토론요지 : 없 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9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혜지, 남궁역, 도문열,
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
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
유정인, 이봉준, 이상욱,
이영실, 임춘대, 장태용,
정준호, 최민규, 한 신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상위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인용 조문 수정함.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 시행령」
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”를 “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<u>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</u>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